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485호(號) 1928년(昭和 3) 8월 9일 목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94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28호(號)(조선국유철도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별표(別表) 화물특정임률표(貨物特定賃率表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8(昭和 3)년 8월 9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국선(國線) 내(內) 특정임률(特定賃率)의 부문[部] 기계류(機械類), 금속(金屬) 및 금속제품(金屬製品), 철도선로용품(鐵道線路用品), 전로재료(電路材料), 철도차량(鐵道車輛: 1품[品] 적재[積載])의 항(項) 중(中) 기사(記事)1을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. 본임률(本賃率)은 조선수전주식회사(朝鮮水電株式會社) 수하(受荷)의 것에 한(限)하여 적용(適用)함.